

시 민

문서번호	환경과-330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일자	2013.1.15.	한미라	이종혁	이재덕	01/15 한국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총무과장 주무관		김소영
방침번호					윤석경

-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위탁처리함으로써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12년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 대 상 : 한강 둔치 및 호안가, 수상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 성 상 :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 처 리 : 소각(에너지 재활용) 또는 고품연료 재활용
- 수집·운반 :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웅비환경-주)에서 수행
(청소용역 계약조건에 중간 처리장까지 운반 포함)
- 최근 3년간 위탁처리(소각) 계약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계약물량(톤)	1,530	1,800	2,800	'11년 계약물량 잔량(27톤) 아월 ('12년 처리량 2,485톤)
계약금액(원)	221,203,310	260,392,140	224,000,000	
낙찰단가(원/톤)	평균144,577	평균144,662	69,399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 (연간단가계약)	
특이사항	1차:300톤(당초계약)+30톤(증액) 2~5차 : 각 300톤	1~6차 : 각 300톤		

-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상물량 증가사유 등
 - '12. 1. 1. 이후 매립지주변 악취민원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사업장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증가
 - 한강 이용객의 쓰레기 배출형태 변화 (재활용불가 쓰레기¹⁾와 매립불가 쓰레기²⁾ 혼합배출)로 인한 소각처리 대상 물량 증가

1) 「재활용불가 쓰레기」란 분리·선별에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로서 폐지, 고철(캔류 포함), 플라스틱(패트류 포함), 유리병류를 제외한 쓰레기를 말함.
 2) 「매립불가 쓰레기」란 재활용불가 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로서 스티로폼·비닐류·플라스틱과 혼재된 종이류 등을 말함.

● 처리방법 변경 검토

- 한강공원 둔치발생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만이 처리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반입이 불가피함.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는 곤란(자원순환과-19443, 2012.11.23)
- 수도권매립지에는 구청장만이 생활폐기물 반입차량등록이 가능하므로 매립곤란

□ 추진방향

- 가연성외(유리병, 캔류, 고철, 음식물류 등)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
-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에서 수집·운반(발생지에서 처리 장소까지)
 - ※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후 남은물량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동일단가로 처리

□ 계약 개요

- 건 명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용역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2014. 1. 31까지
- 예상처리물량 : 2,200톤
 -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물량 산정하여 계약 처리하고 부족되는 예산 확보시 동일단가로 처리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연간단가계약)
 - 사 유
 - 입찰참가 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운반은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가 수행토록 되어 있고, 지역제한 철폐시 폐기물의 신속처리가 곤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금회에 등규정 적용)
-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득하고, 처리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총 소요예산 : 176,000천원

● 일반회계 : 154,600천원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특별회계 : 21,400천원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잠실상수원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545(2013.1.14)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통보』와 관련 폐기물 처리비(특별회계)가 국회승인과정에서 50%이상 삭감되어 예상처리물량이 감소되었으며, 수계위사무국에서 삭감액 전액을 환원추진 예정으로, 환원시에 폐기물 처리물량 설계변경 처리

□ 향후 일정

- '12. 1. 17 ~ 1월말 :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 '12. 1월말 : 입찰공고
- '12. 2월 중순 : 계약체결 및 폐기물 반출.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3매.
3.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를 “갑”, 계약상대자를 “을” 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위수탁 업무를 수행한다.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
2. 성상 : 한강공원 둔치·수중·수상에서 발생된 폐기물(가연성)
3. 처리예정량 : 2,200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II. 과업의 목적

한강사업본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III. 과업의 범위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IV.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이행사항

- 가.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4. 01. 31까지이며, “갑”의 요청에 따라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 시까지 처리단가의 변동 없이 연장처리 할 수 있다.

나. “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비가 최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장비 고장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를 거절·중단·유보해서는 아니된다. 계약기간내에 상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의무 및 조건

가. 본 과업내용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계약에 적용한다.

나. 폐기물의 운반은 “을”이 지정한 처리시설(적환장)까지 “갑”이 운반하며, “갑”이 폐기물처리를 요구할 시 처리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쌍방 확인 후 처리한다.

다.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책임은 “을”에게 있다.

라. “을”은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마.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훈령·지침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갑”의 해석에 우선 따른다.

바. 폐기물의 반입량 확인은 차량별로 “갑”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을”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을”은 반드시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계량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사. 폐기물의 처리예정량, 처리기간 등은 한강사업본부 폐기물처리 정책변경이나 현장여건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쌍방간의 합의시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 “을”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이 위탁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정상대로 재 위탁 할 수 없다.

- 자.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차. 용역 착수 전에 “을”은 폐기물 처리 허가증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 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타. “을”이 폐기물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갑”은 연료 매수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폐기물 소각에 따른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에너지를 공급 받는자나 공급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정보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V. 행정사항

1. 하자책임관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 가. “을”이 본 과업내용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나.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때
- 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시나 「2. 과업의 의무 및 조건 “자”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대금지급방법

“을”은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 기록하여 위탁처리비 청구시 『폐기물인계서』 원본과 반입대장을 첨부하는 등 관련 제반서류를 기성부분 준공검사원과 함께 월별로 청구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의무

과업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재판관할권

갑”과 “을” 사이에 분쟁 발생시에는 “갑”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견 적 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서기 2013년 1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137-81-09582

상 호 주식회사 케이비텍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귀중

주 소 인천 서구 석남동 223-21

전 화 032) 571-3224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대 표 자 박 무 용



품 명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세 액	비 고
폐합성수지	1	톤	150,000	150,000	15,000	
계						
참 고	* 운반비 제외 * 일반소각 처리					

견 적 서

견적번호: 3R - 20130109

일자: 2013.01.09

To: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Attn: 환경과

한국쓰리알 환경산업(주)			
대표이사 이 은 이			
사업자번호	215 - 87 - 13049		
주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692-2 동남권유통단지 5블럭		
전화번호	02)401-6789	FAX	02)401-6644
견적담당자	김명희	전화번호	02)401-6789
E - mail	kmh@3r.or.kr		

아래와 같이 한강공원 둔치 및 수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단가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부가세 별도)

합계금액 : 일금				원정 (₩			원정)
품명	단위	수량	운반비	처리단가	공급가액	처리방법	비고
한강공원발생폐기물	Ton	1	-	90,000		재활용	VAT 별도
(기타조건) 1. 처리장소까지 도착도 기준임 (운반비 미포함) 2. 부가세 별도입니다.							

산출기초조사서

건 명 :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용역

산출금액 : 금176,000,000원(금일억칠천육백만원정)

(단위 : 원)

구 분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단가:원/톤)			산 출 가 격	
			삼호환경 기술(주)	한국쓰리알 환경산업(주)	(주)케이비텍	단 가	금 액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톤	2,200	80,000	90,000	150,000	80,000	176,000,000
부가가치세						면세	
합 계						80,000	176,000,000
※ 수집, 운반비 별도(수집,운반은 한강사업본부 청소용역업체에서 수행)							

2013. 1. .

조사자 : 지방공업주사 한 미 라 (인)

확인자 : 지방공업사무관 이 종 혁 (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분임)경리관 귀하

견 적 서

견적번호 : 130109-1

일자 : 2013년 01월 09일

TO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ATTN : 한미라 님

전화 : 02)3780-0786

팩스 :

공 급 자	사업자	220-81-98145		
	상호	삼호환경기술(주)	성명	이 장 근
	소재지	경기 용인 남사 북리-84-6		
	전화	031)322-3507 (내선 106)		
	팩스	031)322-3509		
	홈페이지	www.samhoenv.co.kr		

※ 담당자 : 정대섭 과장 (010-9403-9914)

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한강공원 둔치·수중·수상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의 재활용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번호	항 목	단 위	단 가	비 고
1	가연성폐기물 처리	톤	80,000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업종코드: 6786)

- 도착도 기준 입니다. (운반비 별도)
- 부가세 제외금액 입니다.
- 본 견적은 30일간 유효합니다.